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방송통신위원회

##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 발생 시 지원대상사업자별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 기준 마련(안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나.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의무 이행 유예 기간 확대(안 제9조 제2항 단서 신설)
- 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고시(별지 [별표1] 개정)
- 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최소 지원규모 고시(별지 [별표2] 개정)
  - 한국디엠비(주)를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고, 최소 지원규모는 부칙에 따라 별도로 산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조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별첨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000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2.09.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특례) ①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2023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결합판매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균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되, 2028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시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 지원규모의 비율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① (생략)

② 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매출총액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  
-----  
-----  
-----  
-----.

⑤ -----  
----- 제4항-----  
-----  
-----.

제9조(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0461%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주)에스비에스엠앤씨)	9.1362%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5년 평균 비율(%)	조정률(%)	결합판매 지원규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주)	0.6172%	99.8589%	0.6163%
	대구문화방송(주)	0.4534%		0.4528%
	광주문화방송(주)	0.3771%		0.3766%
	대전문화방송(주)	0.4141%		0.4135%
	전주문화방송(주)	0.3787%		0.3782%
	(주)엠비씨경남	0.6348%		0.6339%
	제주문화방송(주)	0.4506%		0.4500%
	울산문화방송(주)	0.3675%		0.3670%
	춘천문화방송(주)	0.3960%		0.3954%
	(주)엠비씨강원영동	0.7201%		0.7191%
	포항문화방송(주)	0.3235%		0.3230%
	여수문화방송(주)	0.2952%		0.2948%
	(주)엠비씨충북	0.8067%		0.8055%
	원주문화방송(주)	0.3354%		0.3349%
	안동문화방송(주)	0.3046%		0.3042%
목포문화방송(주)	0.2938%	0.2934%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재)CBS	1.7368%	99.8589%	1.7343%
	(재)불교방송	0.4862%		0.4855%
	(재)가톨릭평화방송	0.4267%		0.4261%
	(재)극동방송	0.1999%		0.1996%
	(재)원음방송	0.2259%		0.2256%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0.0535%		0.0534%
	(재)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0.0067%		0.0067%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6%		0.0126%
	한국교육방송공사	1.4056%		1.4036%
	(주)경인방송	0.1583%		0.1581%
	(주)YTN 라디오	0.1652%		0.1650%
한국디엠비(주)		0.0170%		
합계		12.0461%		12.0461%



2. (주)에스비에스엠앤씨((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케이엔엔	1.1480%
	(주)티비씨	0.8941%
	(주)광주방송	0.7479%
	(주)대전방송	0.6241%
	(주)전주방송	0.4148%
	(주)울산방송	0.4166%
	(주)청주방송	0.4287%
	(주)지원방송	0.5655%
	(주)제주방송	0.4069%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3.4895%
합계		9.1362%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272